2005. 6. 24(금) 10:00
제112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6. 13. 이동수의원 외 3인

나. 회부일자 : 2005. 6. 14.

다. 상정일자 : 2005. 6. 20.(제112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이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례회에 회의일자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3조(회기)

- "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조항 전부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근하)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간2회를 합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3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바, 이를 근거하여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정례회의를 운영하여 왔음.

○ 금번 개정하는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정례회의 회기일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상위 근거법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적·행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향후 본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정례회의를 운영함으로써, 그간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년간 35일과 45일로 회기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회기 구분 없이 총 80일을 활용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회기가 운영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윤성열 의원)

○ 조례개정중에서 단순하게 35일만 삭제한다는 목적이 무엇이며, 1차, 2차정례회는 존속하는 것인지?

나. 답변요지(이동수 의원)

○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정례회 일수가 35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었는데 이것이 삭제됨에 따라 10일을 하던지 20일을 하던지 총 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정례회는 연2회로 1차는 6월 20일경, 2차는 11월 25일경에 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슴.

5. 소 수 의 견

" 없 음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